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679
----------	-------

발의연월일 : 2025. 11. 28 .

발 의 자 : 김태년 · 진성준 · 박용갑
김영환 · 홍기원 · 박홍배
김우영 · 박민규 · 윤종균
정준호 · 이광희 · 김영진
이주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2년 이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근로자 또는 시민 중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입찰 참가의 경우에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제재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를 일으킨 자를 추가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 확보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8호의2 신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계약을 이행할 때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 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